

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수당 등 조사 결과

1. 배경

- 언론보도 및 국회 의원실 등이 재단 이사장의 수당 부당수령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국에너지재단에 대하여 임직원 보수 집행 실태 등 기관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조사 실시

2. 조사 결과

- ① (이사장 수당 신설 부적정)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을 위반하여 이사회 심의·의결 없이 '22.3월부터 이사장 수당을 신설(월 230만원)
- ② (이사장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) 집행이 제한된 시간·장소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및 출장복명 없이 여비 집행 등 총 41백만원 부적정 집행
- ③ (시공업체 선정 관련) 평가위원회 Pool을 확충하는 한편, 선정평가 가점제도는 신규 업체가 평가에서 불리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
- ④ (자산관리 부적정) 최근 3년간 자산실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 등
- ⑤ (세무업무 관리 미흡) 지방세법상 급여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출산전후 휴가, 육아휴직 등 관련 급여를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방세 690천원 과납

3. 조치 결과

① 신분상 조치

① ○○○○ : 이사회 통보 및 통보(인사자료)

- 재단 정관상 임원의 임면은 이사회 심의·의결 사항이므로 이사회에 통보하고,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'통보(인사자료)' 조치

② ㉠㉠㉠ : 기관경고 및 통보(인사자료)

-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‘기관경고 및 통보(인사자료)’ 조치

③ ㉠㉠㉠ : 문책 요구

- 정관 및 정부지침,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권 침해 및 사규 위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,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초래한 책임

② 행정상 조치

-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액 총 41,677천원 “시정(환수) 요구”
-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부실한 회계처리 등에 대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“기관경고” 조치
- 절차상 중대 하자로 수당의 효력이 없으므로, 이사회에서 수당 지급 필요성 및 적정액을 재검토 후 환수 또는 추인토록 “통보”
- 절차상 중대 하자로 「보수규정 시행규칙」의 효력이 없으므로 신설된 이사장 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도록 “개선 요구”
- 시공업체 선정평가 평가위원 Pool 확충 및 가점제도 개선 (개선요구)
- 재물조사 미 실시 등 자산관리 미흡 (기관경고)
- 세무업무 관리 미흡(통보) 등